

비교법제 자료 10-14-①

「

」

2010. 4. 8.

▣ 행사개요

| | |
|----------------|---|
|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법제와 정책 세미나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
|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4월 8일 (목) 14:00 ~ 18:30 ○ 장 소 : 엘타워 그레이스홀 (6층) |
| 주 제 | (1) 글로벌 이슈 대응과 선진 입법체계 구축 (2) 글로벌법제연구센터 3개 사업(비교법제연구, 녹색성장 연구, 법제교류사업)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 |

▣ 세부일정

| 구 분 | 세 부 행 사 | 시 간 일 정 |
|-------------------------------|--|------------------|
| 등 록 | 14:00 ~ 14:30 | |
| 전체사회 : 정명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
| 개 회 사 | ○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 14:30 ~ 14:35 |
| 축 사 | ○ 김상협 (국정기획실 미래비전 비서관) | 14:35 ~ 14:40 |
| Session I 주제발표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2010년 중점연구 및 국정과제 지원 ○ 발 표 : 박찬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 14:40 ~ 15:00 |
| | 제1주제 : G20 정상회의 개최와 출구전략 ○ 발 표 : 이준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5:00 ~ 15:20 |
| | 제2주제 : 녹색성장정책과 현행 법제의 검토 ○ 발 표 : 박찬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15:20 ~ 15:40 |

| | | |
|------------------------|---|---|
| | 제3주제 :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발 표 : 박광동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5 : 40 ~ 16 : 00 |
| 휴 식 | 16 : 00 ~ 16 : 20 | |
| Session II 심층토론 | 16 : 20 ~ 17 : 40 | |
| | 사회자 | 박찬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
| | 진행방식 | 사회자 진행에 따른 심층 토론 |
| | 토론자 (Panel) | - 고낙훈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 박경희 (아시아법연구소 국장) -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덕기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사무관) - 이창수 (국정기획실 국장) - 정태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논 점 | 비 교 |
| 녹 색 | |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향후 과제 |
| 교 류 | |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체계화 |
| Session III 종합토론 | 17 : 40 ~ 18 : 30 | |
| | 정책의견 개진 및 종합토의 (Floor) | |
| | 분과위원 (Floor) | - 김창화 (지평지성 변호사) - 박선욱 (경원대 법과대학 교수) - 손승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삼 (선문대 법과대학 교수) -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정일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최혁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p>만찬</p> | <p style="text-align: center;">18 : 30</p> |

목 차

| | |
|--|-----|
|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2010년 중점연구 및 국정과제 지원 | 9 |
| ■ 제 1 주제 G20 정상회의 개최와 출구전략 | 17 |
| ■ 제 2 주제 녹색성장정책과 현행 법제의 검토 | 25 |
| ■ 제 3 주제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45 |
| ■ (별첨자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57 |
| ■ 패널 및 분과의원 의견서 | 97 |
| ■ 회의록 | 133 |

글로벌법제연구센터 2010년 중점연구
및 국정과제 지원

발표자 : 박 찬 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연구 목적 및 체계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연구 시스템





글로벌법제연구센터 국정과제 지원 기능 (1)



국정현안 분석

법제와 정책 연구

- 국정과제 중심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단기 수시과제 성격의 보고서로서, 연구결과의 시의성 확보
- 정책현안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제 발굴 : 에너지(원자력 등), 금융, 환경,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등

글로벌법제연구센터 국정과제 지원 기능 (2)



입법 지원

최신외국법제정보

- 맞춤형 입법정보 : 신청기관(정부부처, 일반기업 등)의 요청
- 외국법제동향 : 주요 국가 모니터링 스태프 제도
- 비교법 현안분석 : 후속연구/현안과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주요 국가 모니터링 스태프 제도

- G20 국가를 대상으로 최근 법제 현황 모니터링
- "최신외국법제정보"의 "외국법제동향"에서 발표
- 정부부처 배포 등을 통하여 최신 외국법제정보 제공

글로벌법제연구센터 국정과제 지원 기능 (3)

정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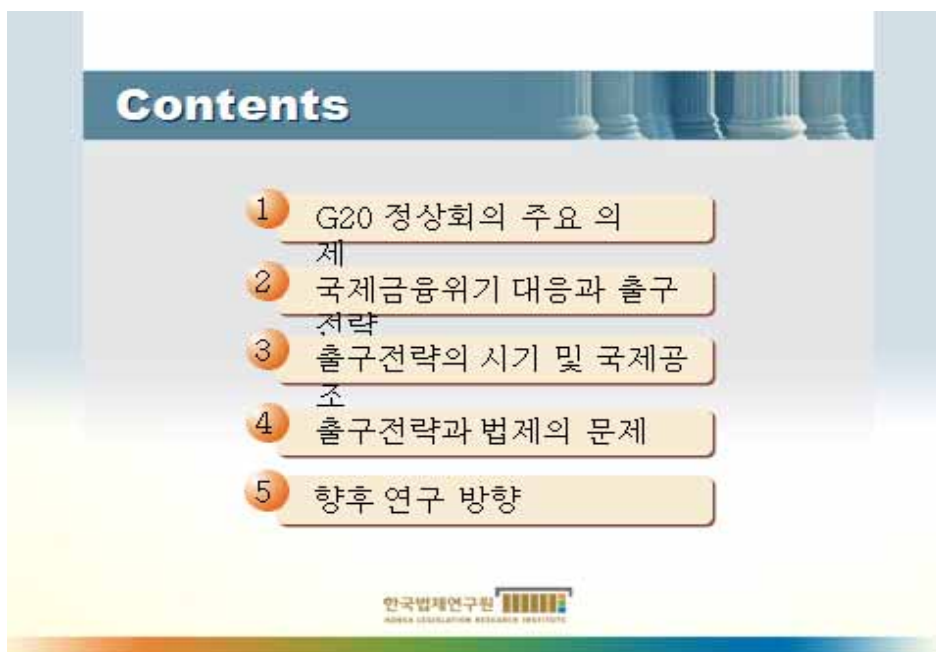
중점 연구과제 수행

- 주요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연구 수행
- 비교**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 연구
- 녹색** 분야별 녹색성장법제에 관한 연구
- 교류** 각국의 ODA 법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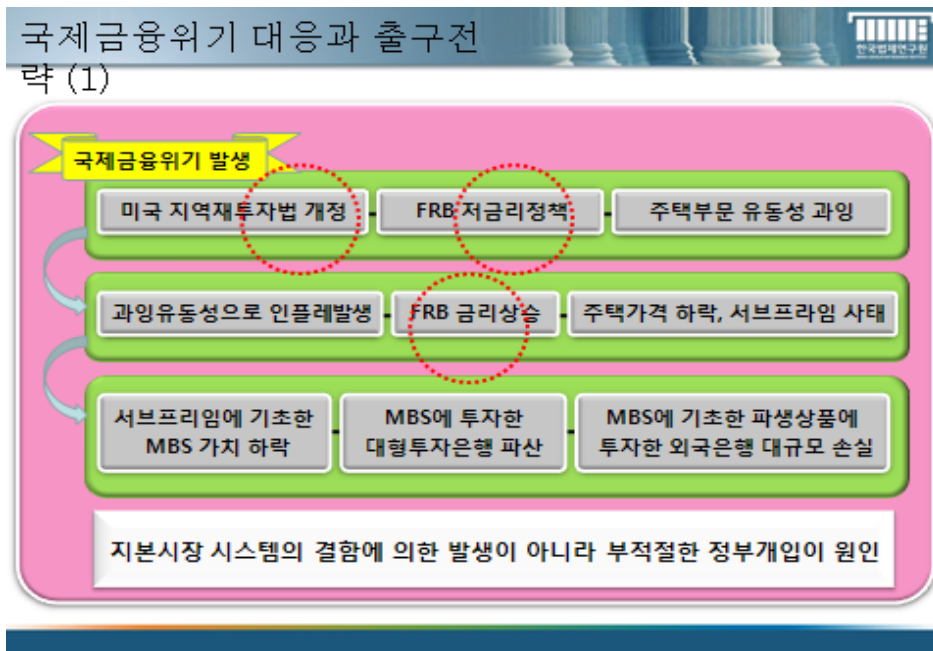
G20 정상회의 개최와 출구전략

발표자 : 이 준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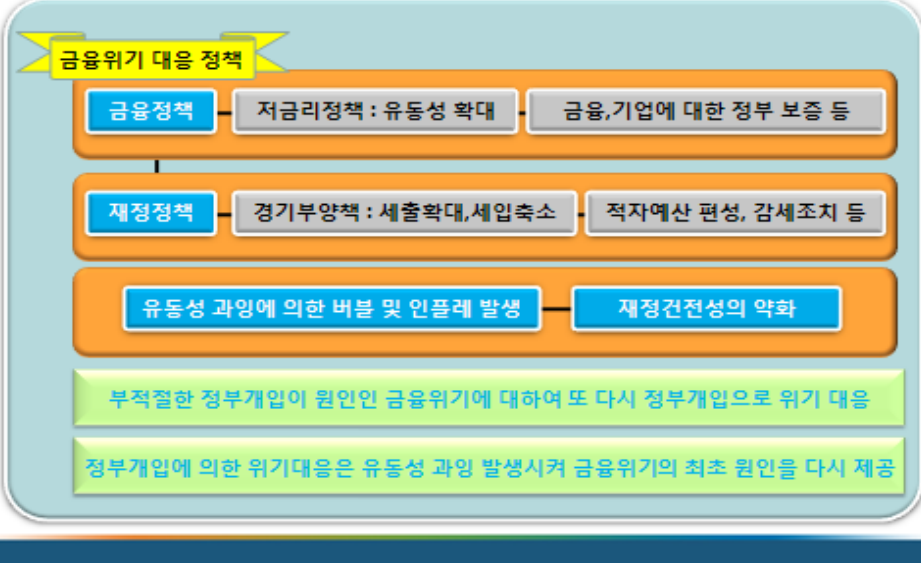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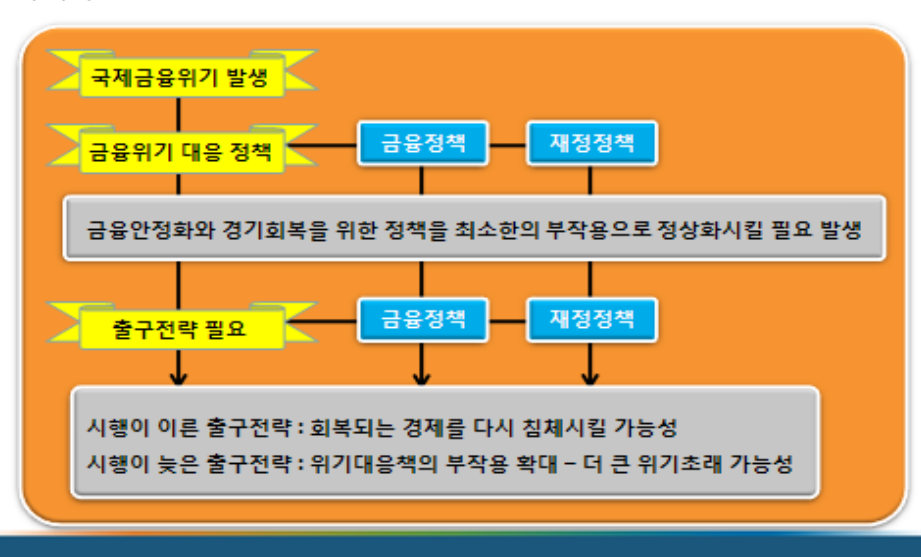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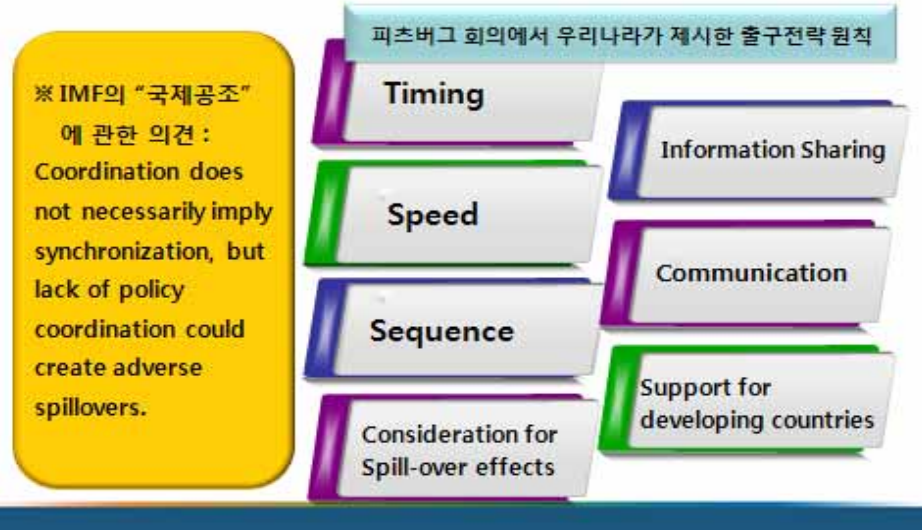
국제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2)



국제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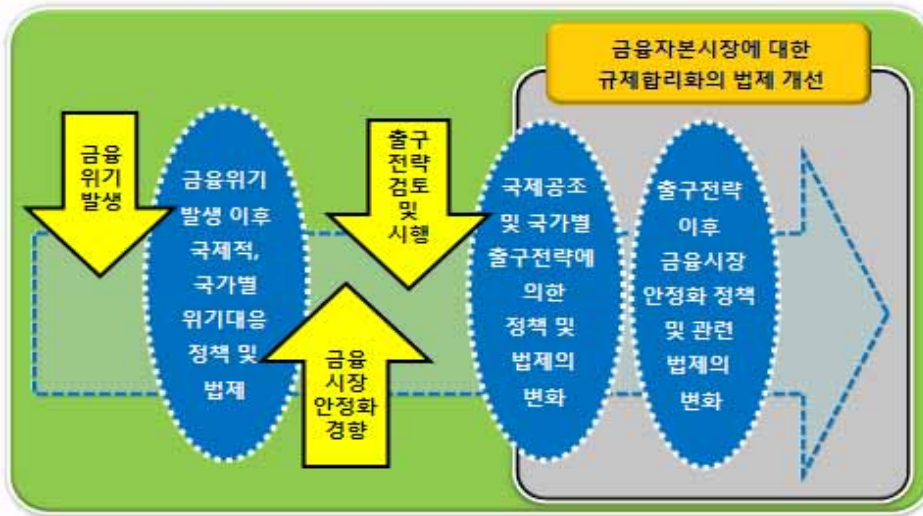
출구전략의 원칙



출구전략의 시기 및 국제공조



출구전략과 법제의 문제



향후 연구 방향



녹색성장정책과 현행 법제의 검토

발표자 : 박 찬 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녹색성장정책과 현행 법제의 검토

2010. 4 . 8.

박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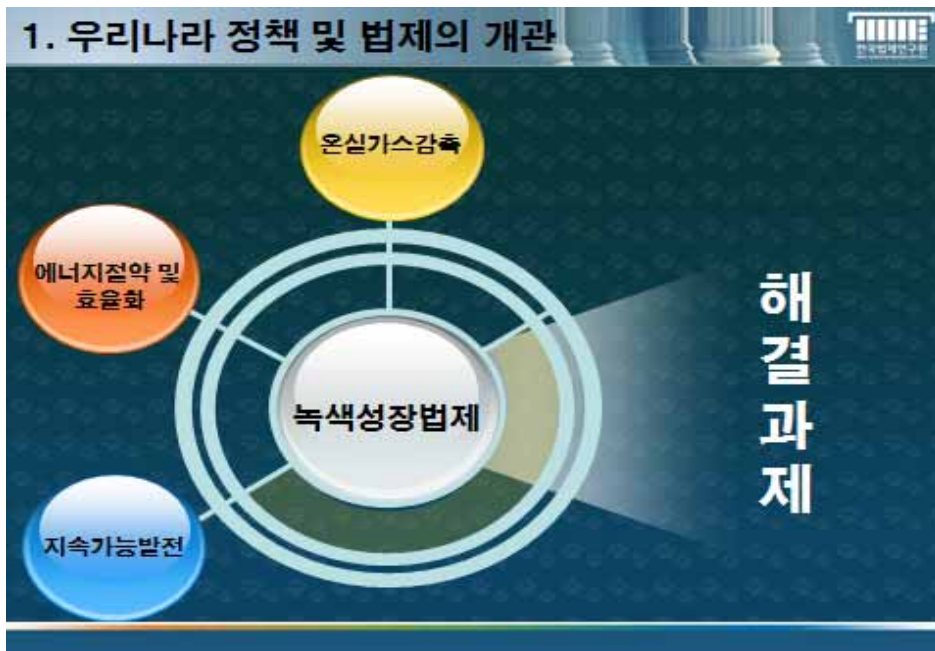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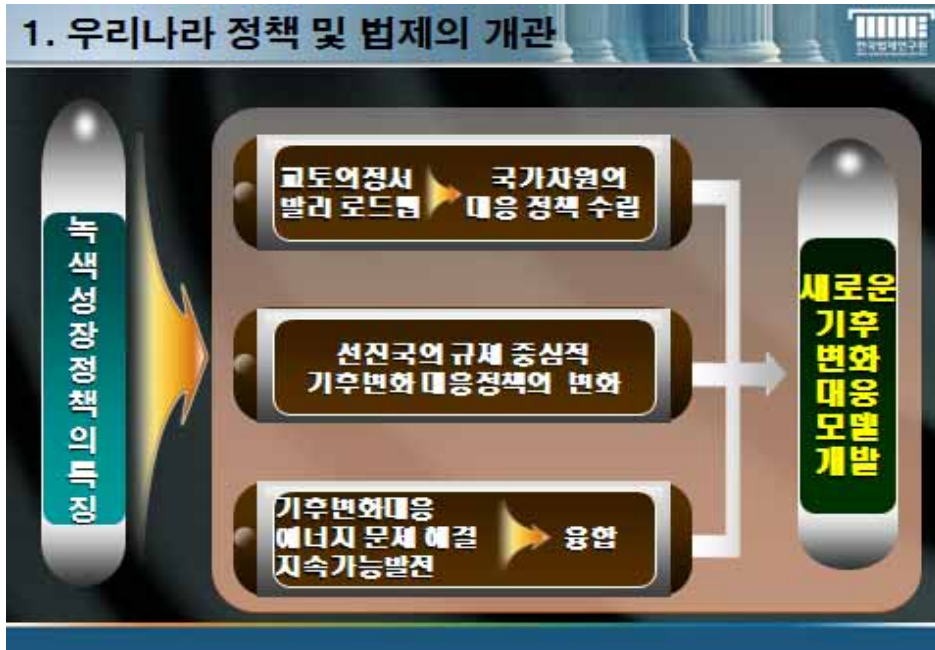


Contents


- 1 우리나라 정책 및 법제 개관
- 2 외국의 녹색성장법제 개관
-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 4 결 론 - 시행령 검토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1. 우리나라 정책 및 법제의 개관



해결과제

규제 합리화

→ 달성 가능한 규제수준의 도입을 통한 시장순격요동
+ 누릴 것인가로서의 녹색성장제도 강화

법제간의 충돌

→ 대기환경보전법 [추진적 온실가스규제체계]
에너지 관리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의무과에 대비한 선제적 시스템 구축

→ 산업용 건물용 건물+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적 완결을 위한 사전적 시스템 구축

→ 정부의 정책 추진체계 정비+신규설 있는 온실가스 연쇄트리 구축

2. 외국의 녹색성장법제의 개관



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은
중합법체계

- 일본 :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 영국 : 기후변화법
- EU : 20-20-20 Package 지침

- 미국 : Clean Air Act를 근거로 MRR 입법, 배출권거래제 법안
- 호주 : 온실가스의무보고법(NGER), 배출권거래제 법안
- 독일 : 배출권거래제 법률

개별
법률
체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2. 외국의 녹색성장법제의 개관

외국의 입법동향

규제와 지원 구분

- 환경관련법제 중심
- 추진체계정비 및 규제 수단도입(MRV, ETS, 부문별 규제 등)
- 에너지 관련법제를 통한 지원 방안 모색(탄소세에 기초한 지원 : 고정가격매수제도, 기존건물의 강제전환)

2007 발리 로드맵

- 측정, 보고 및 검증 가능한 온실가스감축 시스템 구축
- 국가 감축목표설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이행 계획 수립

국가 온실가스종합 정보관리체계의 신뢰성 제고

-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측정 및 계산 방법을 포함한 good practice 모델 개발 및 적용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 법안의 주요내용

- 01
녹색성장정책의 연계방안
- 02
녹색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
- 03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
- 04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도입
- 05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06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체계 정비
- 07
녹색건축물의 도입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녹색성장정책의 연계방안

쟁점사항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계 및 조정
-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관련조문

기본법 제9조부터 제13조

시행령 제4조부터 제9조

주요내용

녹색성장 국가전략수립

녹색성장위원회
(컨트론타워)

심의 및 조정

중앙주진계획
지방주진계획 수립

효율적 정책수립체계 구축
중복투자 및 공백 방지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녹색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

쟁점사항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성장동력 창출 +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모델
- 녹색버블방지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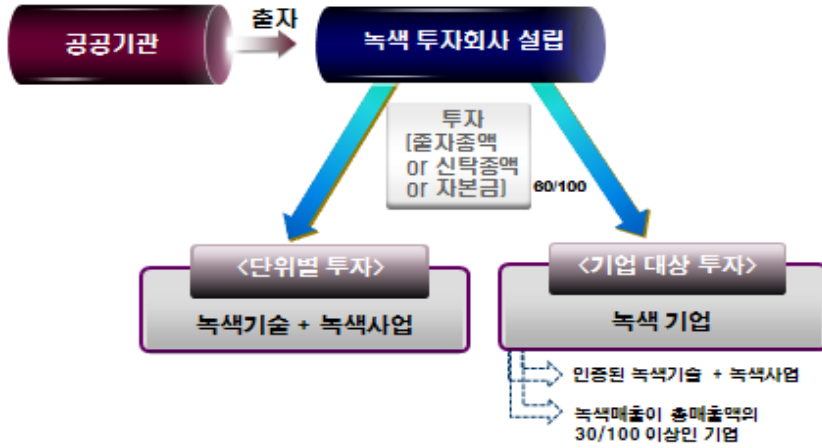
관련조문

기본법 제29조

시행령 제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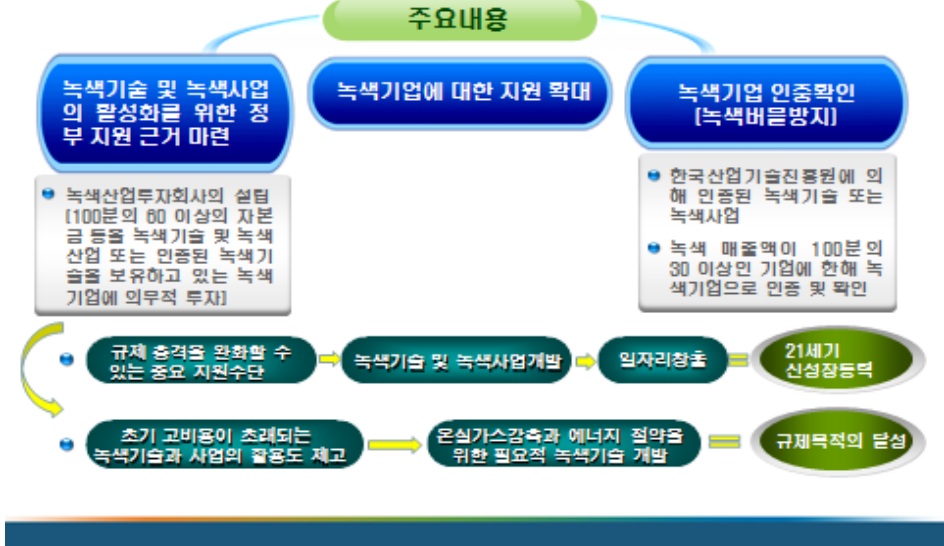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녹색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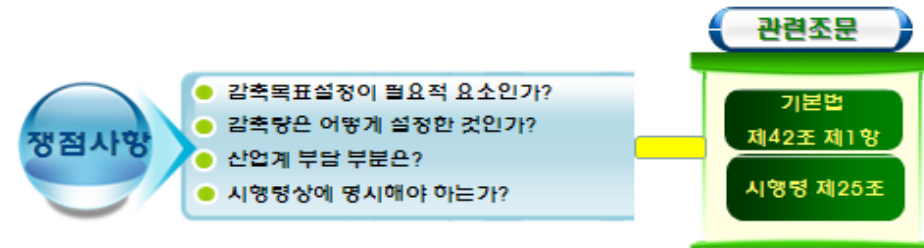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녹색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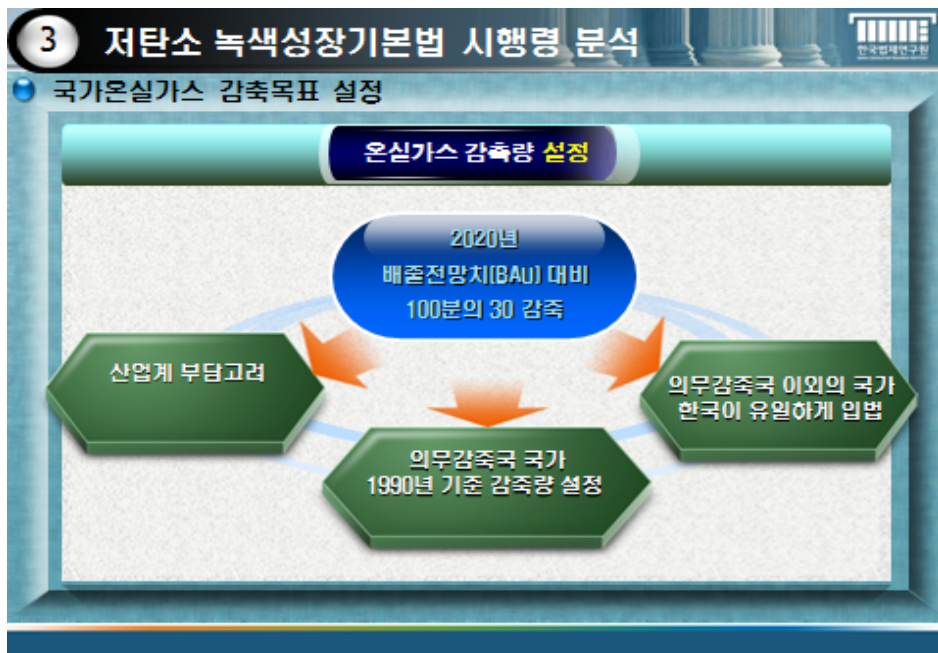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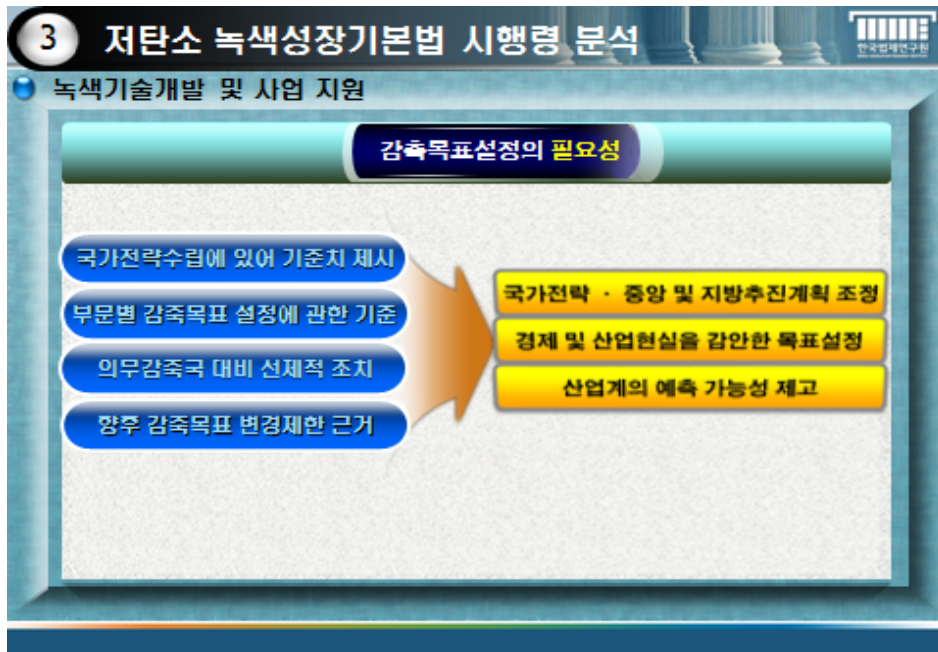
주요내용

- 교토의정서 감축의무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감축목표설정 의무 부담
- 2007 발리 로드맵에 따라 국가온실가스배출량 목표 설정

주요국가 감축목표

| 국 가 | 감축목표 | 입법화 | 목표연도/기준연도 |
|-----|--------|-----------------|-----------------------|
| EU | 20% 이상 | No. 406/2009/EC | 2020/1990 |
| 영국 | 80% | 기후변화법 | 2050/1990(온실가스배출량 기준) |
| 독일 | 40% |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법 | 2020/1990 |
| 프랑스 | 만 5% | 그린법 | 2050/1990 |
| 호주 | 25% | 배출권거래법(안)(CPRE) | 2020/2000 |
| 일본 | 25% | 기후변화법(안) | 2020/1990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 쟁점사항 | 관련조문 |
|-----------------|--------------------|
| 규제대상 온실가스 | |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 기본법 제42조 제44조 |
| 관리업체지정 기준 |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5조 |
| 목표관리 절차 및 방법 | |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규제대상 온실가스

메탄(CH₄) 이산화탄소(CO₂) 과불화탄소(PFCs)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₆)

+ ?? (추가지정 온실가스)

UNFCCC, IPCC 호주 NGER
 EU Directive 미국 MRR, etc

시행령상 추가지정 가능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규제대상 온실가스

시행령상에서 규제대상 물질축소

- HFCs와 PFCs 는 20개 세부 물질로 한정 (측정기술 및 GWP의 고려)
-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6개물질 모두 포함
- 배출권거래제 법률안 제정시 거래대상 온실가스 한정 방안 고려

온실가스 총배출산정 기준안 마련

- 지구온난화지수(GWP)등 측정 또는 계산 기준 마련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제기구 기준안과 연동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MRV 시스템

온실가스 목표관리

규제목적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규제목적 달성수단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통합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6조(인벤토리)를 통해 온실가스 중심의 정보체계 구축
→ 규제 단일화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산정방법

- 1 에너지 투입량만으로는 원료 및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없음
- 2 TMS의 정확성은 인정(다만, 현재의 기술력으로 관리업체의 전 공정에 계측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에너지 투입량(사용량) + 공정(주원료, 부원료) + 최종단계 배출량 등 생산과정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정확한 산정방법 선택 Good Practice(IPCC, MRR, NGER)

부문별 목표관리 방법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연계
-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중심으로 에너지 목표관리방안 도입 필요
 - 환경부 지침 제정사항
 - ※ 온실가스배출량에 기초한 목표관리는 정확성면에서는 우수
 - ← 필연적 전제 조건 : 측정 및 통계, 포획저리에 관한 기술개발 필요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기준

논점 지정단위(기업or사업장) & 온실가스배출량 or 에너지사용량

관리업체 지정대상 →

| 시행령 | 입법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사업장 모두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NGER에서 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와 사업장) ● 일본(사업장 단위→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포함으로 전환) ● 영국(기업) ● 독일(사업장 단위이나 설비 단위별로 세분화) ● 미국(사업장)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환경연구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기준

관리업체 지정대상

기업단위지정(호주, 일본, 영국)

③기업의 경영권(운영통제권) → ③실효적 감축수단 도입, ③기업 경영에 융통성 부여
 (예를 들어, 삼성전자주가 관리업체로 지정, 2011년도 반도체부문 호황 예상, 상대적으로 백색가전부분은 기술개발필요 → 이 경우 삼성전자 경영진은 전체 총배출량에서 백색가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2011년 감축 → **기업부담경감**)

사업장단위지정(미국)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사업장별로 측정하는 것이 효율적

※ 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기업 부담완화 측면에서 기업단위가 적절, 다만 특정과다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한국환경연구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기준

관리업체 지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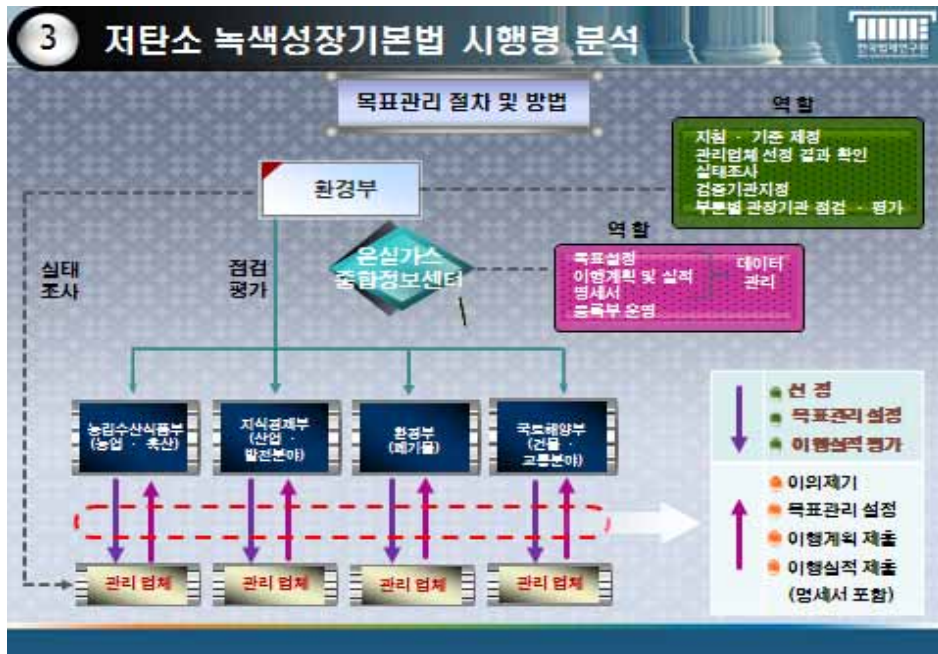
시행령

기업 125,000톤 CO₂-eq and 500 테라줄

사업장 25,000톤 and 100테라줄

약 600개 관리업체가 지정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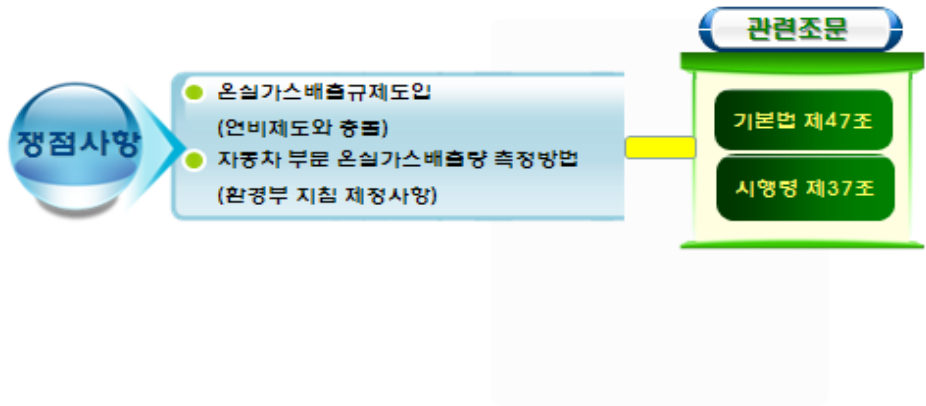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투입량 중심의 최소 기준
 → 에너지 투입량만으로는 정확한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판단할 수 없음, 공정과 최종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을 포함하여 기준 설정(125,000톤 또는 25,000톤)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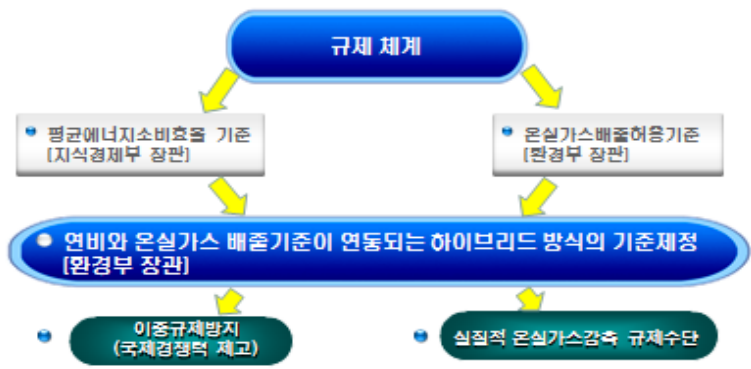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체계 정비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체계 정비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체계 정비

외국의 입법례

EU

| 년 도 | 배출 허용(CO ₂) | 비고(M1) |
|------|-------------------------|--|
| 2012 | 130g/Km | 목표치 수정권고 (120g/Km. 바이오 연료 의무화시 권고치) |
| 2020 | 95g/Km | |

시행시기를 차등적으로 2012년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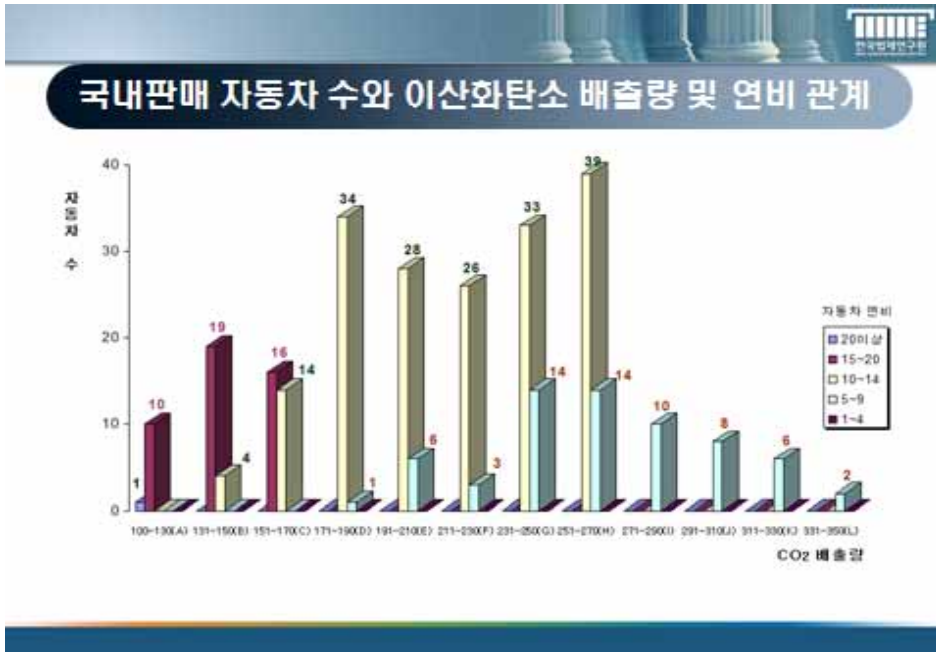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체계 정비

외국의 입법례

EU

| 배출 초과량 (g) | 부담금 (€) | 누적 부담금 (€) |
|-----------------|---------|------------|
| the first gram | 5 | 5 |
| the second gram | 15 | 20 |
| the third gram | 25 | 45 |
| the fourth gram | 95 | 140 |

미국 환경부는 Footprint 방식의 온실가스배출기준(CO₂)을 중심으로 연비를 연등시키는 기준안 발표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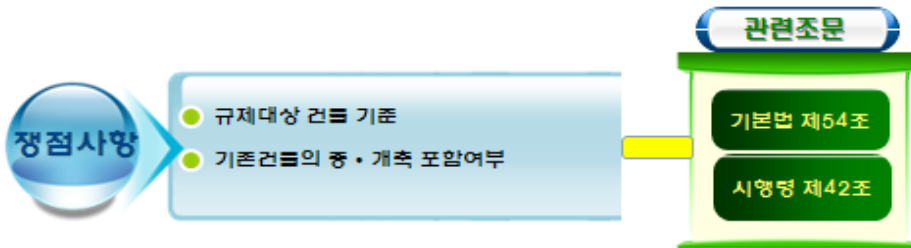
주요 내용

3. 입법적 과제

-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또는 산정
 - 호주 :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측정(대형 운수업체의 경우 관리업체)
 - 미국 : 자동차 엔진제작업체가 평균측정치를 활용해 온실가스배출량 보고(MRR)
- 검토사항
 - 관리업체대상인 운송업체 : 에너지 사용량에 기초하여 온실가스배출량 보고
 - 기타 국가온실가스정보관리체계에 있어서 교통부문 : 호주식 모델의 선택 → 부문별 관장기관, 미국식 모델의 선택 →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부문별 관장기관의 정보공유 및 협조시스템 필요
- 탄소세 또는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배출 부담금 도입시 규제 대상 일원화 필요
 - 예) 온실가스(부담금 부과기준) + 연비(표시제도), 온실가스(표시제도) + 연비(부담금 기준)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 녹색건축물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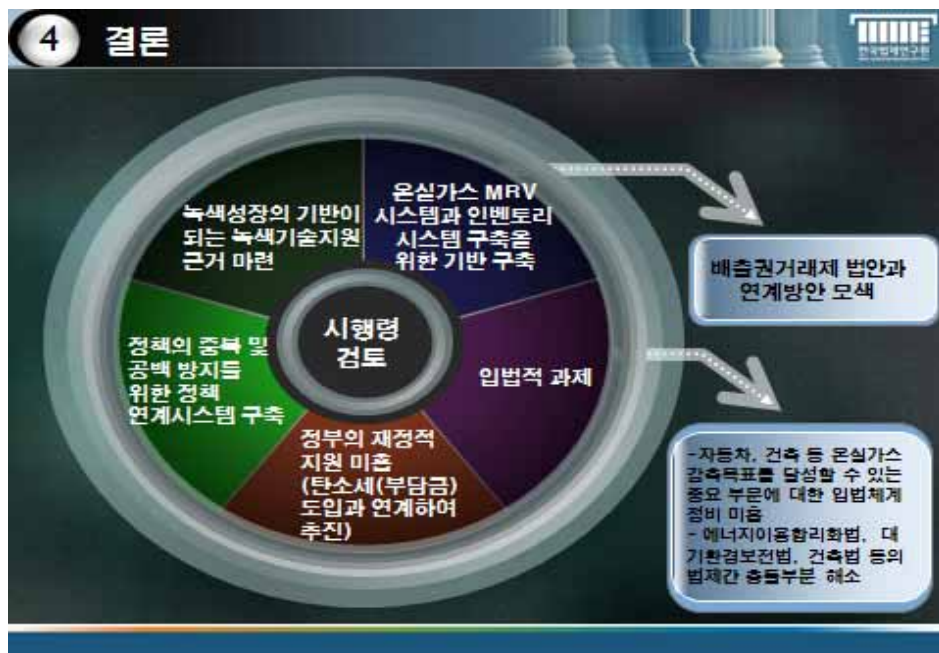


3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분석

● 녹색건축물의 도입

주요 내용

- 1.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공동주택, 박물관(제1종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운동시설 중 수영장, 업무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
 - 기존 건축물의 중·개축 및 기존 건물의 전환 내용은 미비
- 2. 외국의 입법례**
 - 프랑스 그르벨법 : 기존 건축물의 강제전환제도 도입(정부의 재정적 지원)
 - 영국 건축법 규정 : 에너지 이용효율 등급강제와 중·개축 부분에 적용
 - 미국 캘리포니아 그린빌딩 코드 : 건축설계에서부터 강제기준 적용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7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

1 한국법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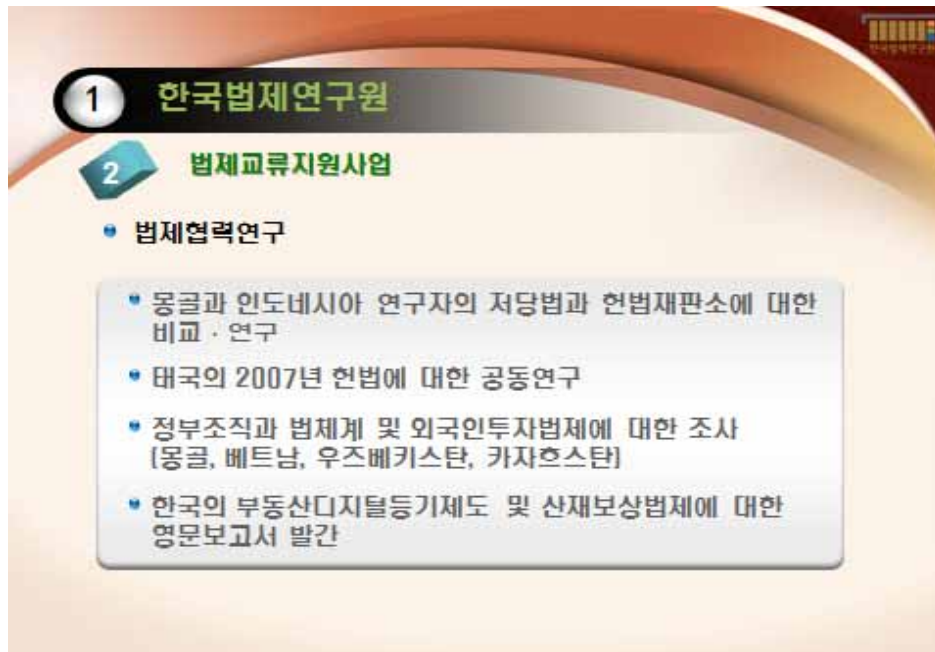
1 아시아법령 정보네트워크사업 (ALIN: 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 의의
 -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최초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을 위한 국제적인 법령정보네트워크
[현재 ALIN회원기관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22개 기관]
- 활동현황
 -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 법령정보의 제공
 - 아시아법령 또는 법제의 연구
 - 법령 및 법제의 지원

1 한국법제연구원

2 법제교류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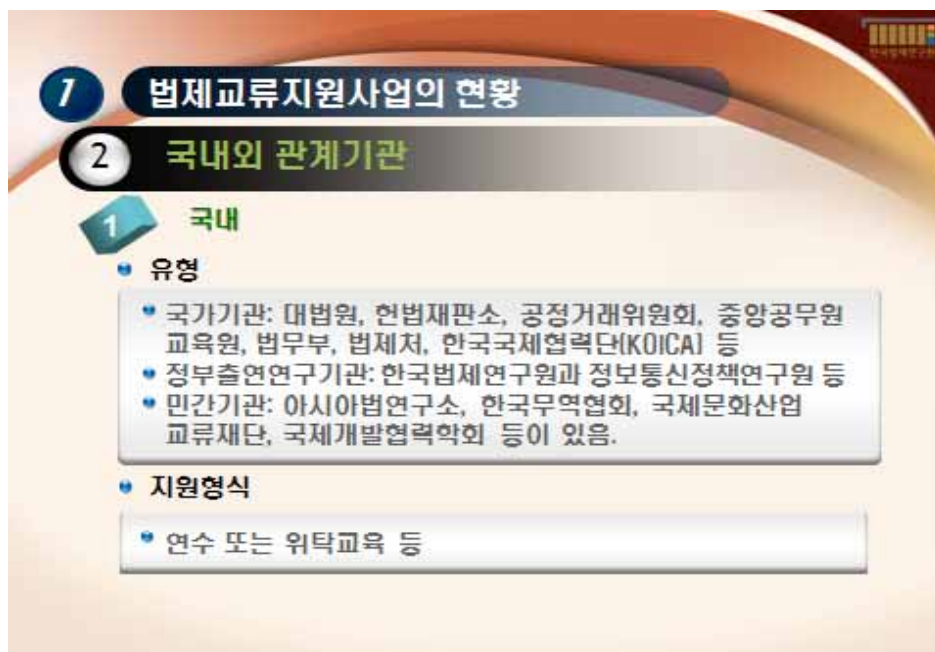
- 법제연수
 - 한·몽 법제실무연수(2008-2009)
 - 한·우즈베키스탄 법제실무연수(2009)
- 법령집 발간 및 DB화 지원
 - 몽골
 - 카자흐스탄



1 한국법제연구원

2 법제교류지원사업

- 법제협력연구
 - 몽골과 인도네시아 연구자의 처당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교·연구
 - 태국의 2007년 헌법에 대한 공동연구
 - 정부조직과 법체계 및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조사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한국의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 및 산재보상법제에 대한 영문보고서 발간



7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

2 국내외 관계기관

1 국내

- 유형
 - 국가기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부, 법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 민간기관: 아시아법연구소, 한국무역협회,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이 있음.
- 지원형식
 - 연수 또는 위탁교육 등

2 국내외 관계기관

2 해외

- 서구의 법체계시스템 이식론
 - 「법과 개발(Law and Development)운동」
 - 「좋은 정부, 좋은 통치 [GG: good government, good governance]론」
- 일본의 법정비지원사업
 - 연수 및 전문가 파견 중심
 - 법령정보네트워크 추진
→ 예) 法情報研究センター (JaLiI)

2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시스템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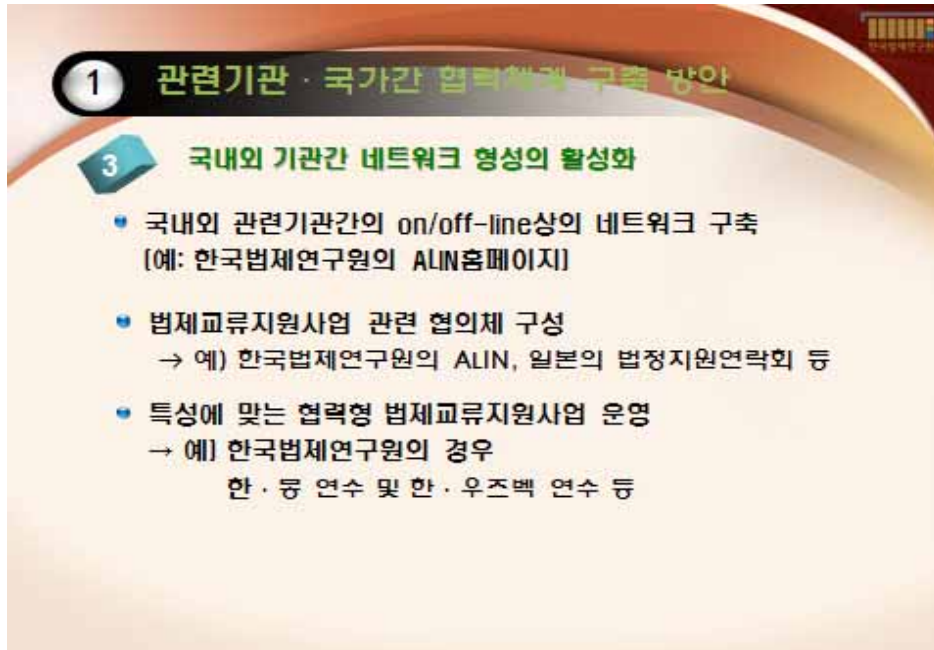
1 관련기관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선행요건

-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기관 · 국가간의 인식공유

2 국제공조연구 및 법제정보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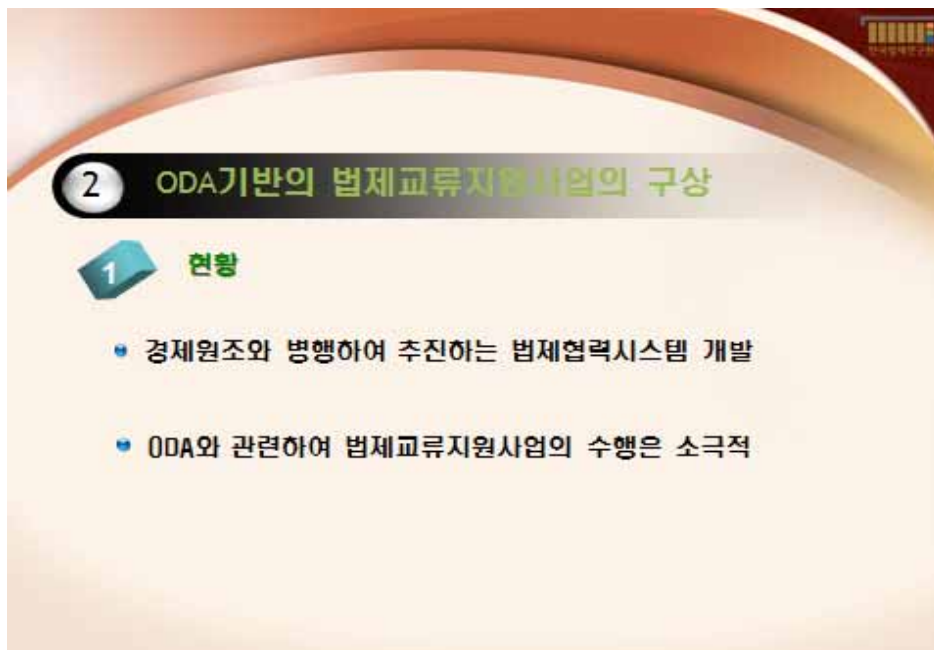
- 2010년에 독일의 아덴아워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 법제협력사업 추진



1 관련기관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국내외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의 활성화

- 국내외 관련기관간의 on/off-line상의 네트워크 구축
[예: 한국법제연구원의 ALIN홈페이지]
- 법제교류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구성
→ 예) 한국법제연구원의 ALIN, 일본의 법정지원연락회 등
- 특성에 맞는 협력형 법제교류지원사업 운영
→ 예) 한국법제연구원의 경우
한·중 연수 및 한·우즈베크 연수 등



2 ODA기반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구상

1 현황

- 경제원조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법제협력시스템 개발
- ODA와 관련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수행은 소극적

2 ODA기반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구상

2 협력체계 구축방안

- 법제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정부의 경제적 지원 및 연수시스템지원을 통한 각 관련 전문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협의회 개최를 통한 부분별 역할 수행 및 법제연수 대상에 적합한 연수 내용 및 방안의 합의
- 각 관련 전문 기관의 협력에 의한 사업 수행
- ODA에 적합한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
- ODA 자체에 의한 법제교류지원사업 관련 Donor간의 공동참여프로그램의 개발

2 ODA기반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구상

2 협력체계 구축방안

- 입법화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정부의 경제적 지원 및 입법화지원시스템 지원을 통한 각 관련 전문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협의회 개최를 통한 부분별 역할 수행 및 법제지원 내용 및 방안의 합의
- 각 관련 전문 기관 및 전문가의 협력에 의한 사업 수행
- ODA에 적합한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

3 법제연수시스템 구축

1 법제연수에 대한 설계방향

- 국제적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능력 제고
- 구체적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

2 법제연수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부문별 준비과제

| 부문 | 준비과제 |
|-------------------------|--|
| 1. 비전과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법제교류 수요 조사 • 법제연수의 목표 및 비전 수립 • 법제협력사업과의 연계성 판단 |
| 2. 사업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적정 연수계획 수립 • 연수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총괄담당자 및 지원인력의 인식 및 지원수준 제고 • 새로운 시도 및 기획 아이디어를 연수계획의 참신성 추구 |
| 3. 프로그램 수행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연수시설, 장비, 투입예산의 확보 • 연수담당 전문(전담) 지원인력의 역할 설정과 배정 • 연수 전후 효과적인 홍보전략 및 방법 모색 |
| 4. 프로그램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방법의 적정성 판단 • 연수 프로그램 결과도출 및 평가방법 설정 • 연수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방안 강구 |
| 5. 국제 법제연구 및 정책개발과의 연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법제정책 내용 반영 비품 설정 • 연수결과와 실제적 현실 전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연수 이후 관련 법제정보 제공 방법 강구 |

4 법제교류지원대상국에 대한 입법화 지원

1 입법화 지원에 대한 설계방향

- 대상국 국내법과 입법화 지원 범제와의 균형점 도출
- 범제도 확립과 기능 확보를 위한 기본적 접근점 모색
- 국제적 수준의 입법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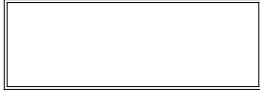
2 입법화 지원에 대한 부문별 준비과제

| 부문 | 준비과제 |
|-------------------------|---|
| 1. 대상국 법제 수요 조사 | - 국가별 법제교류 수요 조사 - 법문화 조사 - 입법협력사업과의 연계성 판단 |
| 2. 사업계획 | -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정 연수계획 수립 - 연수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총괄담당자 및 지원인력의 인식 및 지원수준 제고 - 새로운 시도 및 기존 아이디어 등 연수계획의 참신성 추구 |
| 3. 입법지원 수행능력 | - 적합한 연수시설, 장비, 투입예산의 확보 - 입법화 전문(전문) 기관, 지원인력의 역할 설정과 배정 - 입법화 전후 효과적인 홍보전략 및 방법 모색 |
| 4. 입법지원 내용 | - 입법지원 구성과 진행방법의 적정성 판단 - 입법지원 결과도를 및 평가방법 설정 - 입법지원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방안 장구 |
| 5. 국제 법제연구 및 정책개발과의 연계성 | - 국제 법제정책 내용 반영 비율 설정 - 입법지원결과와 실제국 전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입법지원 이후 지속적 관련 법제정보 제공 방법 장구 |

제 3 주제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3 입법화 지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준비과제

| 부문 | 준비과제 |
|-------------------------|---|
| 1. 사전적 조사에 대한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국의 기존 법시스템의 견고성 여부 -법제도에 있어서 기술적인 시스템의 필요성 여부 조사 -국민법의식조사 -중간 법제교류지원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와 실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어느 계층을 주요한 지원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 -법제교류국과 대상국간의 의견조율 사항 |
| 2. 사후평가에 대한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적 조사에 대한 항목 -입법평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 6 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7 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9 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 3 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연구개발에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국가전략,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상·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녹색성장기획단) 법 제18조에 따른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3.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4 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은 각각 제1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대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3.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녹

색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기준·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녹색경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 5 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내의 여건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3항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관한 계획 중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국내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산업·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건물·교통 분야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2.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사용량 현황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6.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방식을 포함한다)
8.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보고·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부의 관리) 센터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 5.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
-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규모·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규모·처리효율·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10.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① 제34조에 따른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공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④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4명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2.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3.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4.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산림
2.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해양부장관: 건물·교통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 동향, 측정 방법·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제공·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 6 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3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40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6의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7 장 별 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5개년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별표 1]

수소불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물질(제2조 관련)

| | |
|---------------------|--|
| 1. 수소불화탄소 (HFCs) | HFC 23, HFC 32, HFC 41, HFC 43 10mee, HFC 125, HFC 134, HFC 134a, HFC 143, HFC 143a, HFC 152a, HFC 227ea, HFC 236fa, HFC 245ca |
| 2. 과불화탄소(PFCs) | PFC-14, PFC-116, PFC-218, PFC-31-10, PFC-c318, PFC-41-12, PFC-51-14 |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별표 2]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 kilotonnes CO₂-eq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 kilotonnes CO₂-eq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 kilotonnes CO₂-eq 이상

[별표 3]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500 terajoules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350 terajoules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 terajoules 이상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별표 4]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 kilotonnes CO₂-eq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 kilotonnes CO₂-eq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 kilotonnes CO₂-eq 이상

[별표 5]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00 terajoules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90 terajoules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0 terajoules 이상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별표 6]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0조제1항 관련)

1.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 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0.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3.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7.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
1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3.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2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2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3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3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36.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37.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9.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4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3.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5.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4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47.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8.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9.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5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51.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52.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3.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6.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9.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1호 |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1호 |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1호 |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별첨자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위반 행위 | 근거 조문 | 과태료 금액 |
|---|--------------|---------------------------|
| 4.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 법 제64조제1항제2호 |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 5.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 6.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 법 제64조제1항제4호 |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패널 및 분과의원 의견서

고 낙 훈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제4조)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및 제13조)

1) 녹색성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장이 되고,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도록 함.

2) 녹색성장위원회에 녹색성장·산업 분야,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등(제16조 및 제17조)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녹색기술·녹색사업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마.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제25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20년의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함.

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제26조)

1)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2) 부문별 관장기관(농림수산식품부: 농업·축산 분야, 지식경제부: 산업·발전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해양부: 건물·교통 분야)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의 설정·이행 등(제27조 및 제28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는 그 실효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의 지정·관리 등(제29조부터제34조까지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1)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소비하는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의 경우 각각 125,000톤, 500 테라줄(terajoules) 이상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

나)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011년의 경우 각각 25,000톤, 100테라줄 이상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하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함.

2)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그 실적을 제출받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등록부 등을 관리함.

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제36조)

국가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한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차. 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제37조)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되, 환경부장관은 측정 방법·절차,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함.

카. 녹색건축물의 기준 등(제42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쟁점 및 현안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 녹색성장위원회의 당연직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함의 문제
 - 소관 업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녹색금융, 배출권 거래의 성격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보완

○ 녹색투자회사의 범위(제16조)

- 금번 시행령에 의하면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범위를 자통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한정, 모법에 의하여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하겠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예를 들어 녹색산업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기술을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임.

○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제19조)

- 인증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인증의 결정(심의)는 공동의 인증심의위원회, 접수·지원은 위탁기관(지경부 산하의 한국산업진흥원)이 수행함으로써 절차의 복잡, 신청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의 곤란소지
- 공동 인증심의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인증의 형평성, 공정성의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동 고시, 고시 위임사항의 경우 추후 보완이 필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유지 취지를 반영

○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제25조)

- 2020년 BAU대비 30%감축, 목표의 적정성 고려가 긴급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제2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할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조정·협의기구로의 한계가 있는 불과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규정
 - 위원회 심의권한의 제약, 경제정책조정회의 부의안건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규정의 여지가 있으나,
-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임을 고려 관계행정기관의 권한유지 취지의 반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제26조)

- 성장과 환경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조정할 필요
- 대외적 초점인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처간 권한 행사의 명확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는 제외)감축에 따른 총괄·조정기능 수행
-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연계, 산업계의 고려하여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 고시
-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의 통합·연계의 문제는 상호 교차인정이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함에 따른 업계의 이중부담을 경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
- 부문별 관장기관이 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집행업무)을 관장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 축산
 - 지식경제부 : 산업, 발전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환경부 : 폐기물
 - 국토해양부 : 건물, 교통
 - 환경부 장관의 부문별 관장기관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요구권, 실태조사권, 자료 요청권 등 행사 권한, 추후 시행상의 문제 상존하고 그 권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 실효성이 담보될지 주목됨
 - 결국 부처간 권한 조정과정에서 세계적 추세인 환경부에의 단일 권한 부여를 피하면서 시행초기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양대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서 일부 실질적 권한은 부문별 관장기관에 부여하면서 환경부에 메타 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선에서 규정
 - 다만, 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초 초안과는 달리 이중규제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
- 관리업체의 지정(제29조)
- 관리업체의 선정기준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의 모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 것임
 - 당장 600개 업체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
 - 환경부 장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원화된 제도의 도입으로 부득이 환경부 장관의 확인절차 도입 및 종합공표권한 부여. 다만 부정적 측면으로는 관리업체의 입장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모호성이 발생할 소지
-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제30조)
- 목표설정 시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간전문가 협의체 구성 의무화, 목표설정관리의 공정성이 관건임을 고려한 규정이나, 행정기관간의 원만한 합의도출은 추후 중요한 과제로 남음
 - 관리업체가 제출하는 이행계획의 내용의 세분화(연차별 목표, 생산설비 가동율, 사업장별·생산공정별 목표, 산정방법 등), 업계의 상당한 부담이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

- 부문별 관장기관의 업체에 대한 조치에 환경부장관의 관여여지도 아울러 부여
- 검증기관(제32조)
 -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 검증기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원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부문별관장기관의 관여소지 상존
 - 검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등 대부분의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의 협의, 고시로 규정하여 시행상의 적정성이 관건으로 남겨진 실정
- 명세서의 보고, 관리 절차(제34조)
 - 명세서 내용의 세분화(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사업장별·생산공정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 량 등), 운영상의 효율성이 중요
 - 명세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주관, 제출된 명세서는 환경부장관(센터)에게 통보
- 명세서의 공개(제35조)
 - 명세서의 공개 여부는 영업비밀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개여부의 결정에 심사위원회의 관여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운영상에 여러 현안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제36조)
 -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의 이원적 운영체제이므로 불가피하게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 인벤토리 관장기관으로 센터를 설치
 - 어차피 센터는 부문별관장기관의 협조와 관련통계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면 행정의 완결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부인하기 어려움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관리(제37조)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의 업무기능과 관련 첨예한 문제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은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관장
- 연비 및 온실가스의 적용·관리(집행)는 환경부장관이 수행
- 연비 및 온실가스기준을 업체가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포괄적 향후 과제

- 우여곡절 끝에 의미 있는 출범
- 언론보도의 이슈는 권한의 모호성에 기인
 - 모법의 규정이 정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시행상의 문제는 모두 시행령에 위임한 결과
 - ※ 권한의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의 복잡성은 불가피한 실정
- 명세서와 등록부의 이중 부담의 문제
-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활한 업무조정이 긴요
 - 국회계류 중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문제
- 시행상의 노하우 및 문제점을 축적하면서 이를 보완·개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 부처간 권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될 경우 선진국의 예에 따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추후 탄소배출권에 관하여 법률제정 등 후속 입법이 계속될 것인 바, 금번 시행령 제정당시의 현안은 계속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

- 시행령심사시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였고(재입법예고까지 함), 현 시점에서 완벽한 제도의 도입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의미 있는 제도의 도입임에는 분명함

박 경 희

((사)아시아법연구소 사무국장)

1. 현 황

- 법제교류 지원에 있어 아시아 각국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면이 있고 유럽은 문화적, 정서적 친밀도에서 거리감이 있어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임.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큼

- 정부차원의 교류 외에 연구기관, 종교단체의 법조인 모임 등 민간단체의 교류가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중복되거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음.

-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체계적 계획이 필요함.

2. 당면과제: 지원의 활성화

- 체계화 이전에 지원의 활성화

-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교류나 법제정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법제 교류나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3.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제언

1) 법제연구원이 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리드하기 위하여 지원예산
을 확보하고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우리 국격 제고에 대한 기여도
를 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교류사업의 교통정리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이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할 것임.

2) 피지원국 입장에서 교류지원의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우리 정부
에 전달하여 교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 또는
상황이 유사한 2~3개국에 한 명씩 법무관 또는 법제교류담당관이 현
지에 주재근무함. 또한 본부에도 교류지원 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강
화함.

3) 다른 선진국의 원조기관 및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
을 강화함.

4) 지원대상국 법률가 양성을 위하여 단기연수보다 장기교육이 필
요함. 이를 위해 우리나라 법제를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과정 등 영어
강좌를 우리나라 법과대학과 대학원에 설치하고 영문자료들을 충실하
게 준비함. 또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장학제도도 보강함.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여기에서는 편의상 오늘 발제된 테마 가운데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와 관련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KOICA 그리고 법제연구원 등의 행정부처와 단체,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아시아국가에 법제정비를 지원하고 또 그곳의 공무원과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등 법제교류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교류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내용의 법제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입장이 아닌 법제정비의 지원을 받는 나라의 입장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법제, 즉 근대법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우리 스스로 깊이 인식하고 이 관념을 우리 사회에서도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립·항쟁이나 갈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식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법률가(법학자 내지 법실무가)에 의해서 제정법 내지 판례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쟁당사자가 재판을 제기했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가에 의한 재판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법제도만을 정비하여 보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

다. 물론 위와 같은 전제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줄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윤 덕 기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사무관)

□ (시행령의 의미) 본격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환경부는 체제는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나, 운영은 유연하게 적용
- 시행령에 미비한 점이 존재하나, 운영지침 및 기준 마련 등으로 보완 가능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책 강구 중

-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 목적은 “정확한 인벤토리 구축”이며, 이것이 선행되어야 향후 발생할 탄소시장에 대응 가능
- 환경부는 신뢰성있는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MRV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데 주력

□ (관리업체지정, 명세서 공개) 이에 대한 산업체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산업체 부담 최소화

- (관리업체지정) NETIS, CAPSS 등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관리업체 지정
- (명세서 공개) 공개 범위를 명확화 시킬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중이며, 공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할 것

□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과도기적 제도이며, 궁극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로 가는 것이 타당

- 환경부는 EUA, CERs, Offset 등 모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배출권거래제를 지향

정 태 용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색성장기본법이 기본법이니만큼 이 법에 규정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개별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게 됩니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녹색성과 관련된 사항을 입법하려고 하는 경우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색성장기본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 녹색성과 관련된 실적을 과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그 내용은 바꾸지 않은 채 포장만 녹색으로 해서 녹색성의 실적으로 제출하는 사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지 않으면 녹색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녹색성장기본법을 운영하는 부서인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향후 국무조정실의 강력한 조정역량을 기대해 봅니다.

녹색성장기본법과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살펴 보니 관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부담만 지우고 있을 뿐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일체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녹색성장관련 지원방안을 수립할 때에 관리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체에 배정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관리업체의 온실가스감축실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이 행정기관이 관리업체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지침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관리업체가 매년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생산설비·제출원료 등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명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 공개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내용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령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태양광발전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가 태양광발전시장의 규모를 키운 데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관련분야의 시장규모를 키워주는 거시적인 시각의 지원대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병 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색성장정책과 탄소배출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가 탄소종합보험이다. 탄소종합보험은 교토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획득사업을 위한 투자, 금융, 보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때 탄소배출권사업이란 친환경기술 등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사업을 가리킨다. 탄소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자기자본 투입 또는 사업지분 투자 등을 하였으나 비상위험 등의 발생으로 투자금 미회수시 손실(투자원금·배당금)위험, 금융기관이 사업 소요자금을 융자하였으나 비상·신용위험 등의 발생으로 투자금 미회수시 손실(상환원리금) 위험, 탄소배출권 구매자가 사업자와 탄소배출권 선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했던 배출권 미획득시(배출권 양도위험) 관련 손실(배출권 선도매매계약상 계약불이행 약정금액) 위험이 있다. 탄소종합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탄소배출권사업 참여자가 되며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8년부터 각 사업참여자 위험별로 특화된 보험종목들(해외투자, 해외사업금융, 수출보증)을 결합하여 통합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탄소종합보험을 확대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책인 무역보험을 통한 지원의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의 경우 입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종래 선진 외국의 제도와 법률을 주로 수입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입법의 선진화와 좋은 법률의 수출을 앞으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간에 좋은 법률 만들기에 일종의 경쟁이 붙을 정도이다. 그런데 입법의 선진화를 위하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

계의 조화를 신경을 써야 한다. 영미법계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신참자에게 “법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도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법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같은 질문을 대륙법계국가에서 한다면 “법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법이라는 현상은 어느 곳에서는 법관법(Richterrecht) 이라고 이해되고 다른 곳에서는 법률법(Gesetzesrecht)으로 이해된다. 이는 단순한 법률관계의 대비만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법질서 자체의 대비성을 나타내준다. 영미법계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법률가에게서 양법계의 차이성에 대한 질문에서 대륙법계에서는 로마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대하여 그러한 영향이 영국에서는 없었다는 점을 대답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권의 법률가에게는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륙법질서의 특수성은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에 기원하고 있다는 사상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영어권의 법률가는 따라서 보통법에 대비되는 대륙법을 시민법(civil law)이라고 표현하고 이에 속하는 나라들을 시민법국가(civil law country)라고 하고, 그 법률가들을 로마법학자(civilian)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법(civil law)은 바로 로마법 내지 로마법의 전통에서 있는 법을 의미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양대 법계는 단지 피상적으로만 상이한 것이 아니라 대응성이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동일사안의 논리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공통된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점차 공통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항에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양법계의 차이는 더 강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법계의 구분 가운데 한국법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의 법학교육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한 법이론과 학설을 중시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제정에서도 독일법과 일본법, 즉 대륙법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됨으로써 법원의 판례와 사례식 학습이 더 중요하지

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1997~1998년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진외국의 법률제도를 수입하면서 특히 미국식의 제도를 많이 수용한 바 있다. 지금도 입법에 미국식의 제도가 영향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법체계가 바로 영미법계처럼 변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법률 제정과 그의 선진화 및 궁극적으로는 우리법의 외국에의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입법시 영미법과 대륙법을 조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양자를 절묘하게 조화하고 IT기술변화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우리 법률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 선진적인 외국의 법률제도를 수입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을 규율하는 법률제도를 선진적인 것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이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선진 외국의 법제도를 수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외국의 제도를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것이 우리 토질에 맞을 경우에는 입법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유익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합리성은 외견상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 장점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국에서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렇기에 외국의 법제도 수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각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입법하여야 할 영역은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무공해 녹색성장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IT를 계속하여 지원하기 위한 법제, 차별금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위한 법제,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환경문제해결, 조세제도 선진화 등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법을 개정할 때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도 창의적이면서도 옥상옥식의 규제가 되지 않고, 또한 기존법률 간에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 정합성에 맞는 글로벌화된 내용으로 법률내용을 구성함으로써 외국에서 우리 법제를 수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노력이 결집될 때 입법의 선진화, 우리 법제의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나아가 정부의 모든 부처 및 학자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최 윤 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법제교류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세계 국가 등에 대한 한국법제의 단순한 법제소개 및 이식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이익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1990년대 동유럽국가 등이 자본주의화하는 과정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고 있는 법체계를 적극적으로 소개한 것은 향후 동유럽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의 하나였다. 법체계는 한 사회 및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에서의 동질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해당 사회와 다른 사회와의 통합 등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치·경제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일관된 추진

법체계가 한 국가에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사회질서에 다른 국가의 법체계가 유입되어 해당 법체계가 가지는 정신이 해당 국가의 사회질서 속에 자리잡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제교류지원사업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일시적인 수요,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교류는 오히려 법체계간의 혼란 및 국가의 이미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책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상당한 예산과 조직, 해외 네트워크가 마련된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만 법제교류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 선 욱

(경원대 법과대학 교수)

현재 국내외적으로 경제영역에 있어서 큰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시스템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여파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한 정부와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도 막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금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에게도 발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은 금융제도 및 감독체계 개편안을 계속 발표하였고,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접근을 하여 금융위기예 대한 예방과 리스크 대안을 마련하였다.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 재확립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이라는 금융규제개혁안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체계의 개편방안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은 5가지 주요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규제개혁은 ① 금융회사에 대한 견고한 감독 및 규제의 촉진, ② 금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의 확립, ③ 금융폐해 (financial abuse)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④ 금융위기 관리에 필요한 수단을 정부에 제공, ⑤ 국제적 규제기준 강화 및 국제적 공조의 개선을 위하여 5가지 목표를 규정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금융규제개혁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방안을 집대성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금융규제는 우리 금융시장감독체제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외에도 미국의 출구전략과 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및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조세피난처 규제, BIS 규제 등 금융규제조치에 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효율적인 제도 정착화를 유도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융법제의 변화와 정책수행 계획은 출구전략 이후 자본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의 G20 국가의 동향을 고려하여 출구전략과 관련된 현행 국내 자본시장 규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은 향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공조와 공동대응 그리고 출구전략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미국 등의 출구전략 및 유지정책에 관한 법제변화 분석은 시의적절하다.

손 승 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1. 온실가스 감축기술 관련 정책

국내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협약의 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향후 의무이행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집약산업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기술”과 “설비투자”가 있다.

2007년 12월에 개최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EST”)”의 개발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의 활성화를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해서 의약품과 같이 TRIPs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TRIPs상의 강제실시 조건들은 EST에 대한 강제실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이전을 활성화하면서 개도국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는 공동이행제도(JI) 및 청정개발체제(CDM)와 유사한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EST 보유국은 자신의 기술과 감축경험을 다른 국가에 이전시키고 수혜국이 이 기술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기술이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JI 및 CDM에 재원의 지원이 아닌 EST의 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 EST 보유국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이전의 대가로 온

실가스감축 실적을 인정받는 반면 기술수혜국은 R&D 투자 없이도 선진화된 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배출감축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EST 이전국은 인정받은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와도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¹⁾

이러한 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빈국에 대한 기술이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을 구현할 설비를 갖추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등록제도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선진국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개도국의 협조적 태도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규제와 지원 및 인센티브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시행령상의 관리업체에 대한 다양한 의무부과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제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또한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2차 이행기간(2013~2017년)에는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기술로서는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얻고 있으므로 추가 감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혁신기술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1) 손승우,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1호, 2010.3. 참조.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운용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또한 국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염두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적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지원 정책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저탄소 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중심에 자리 맥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의 충돌회피를 넘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장기적인 법제도 정비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범정부적 체계정비와 독립된 전문 기구의 창설 및 권한부여가 요구된다.

양 만 식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 저탄소관련 기술개발은 에너지 및 기후변동에 관한 목표달성에 불가결한 요소.

기후변동, 에너지의 안정공급,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과제는 상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면적이고 조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정책이나 대응책은 퍼즐을 연결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0년까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30%까지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에너지구성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30%로 하는 목표를 연결하는 것,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30%삭감하는 것, 배출권거래나 에너지관련세제를 통하여 탄소가격을 정하는 것,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다. 비용 대 효과가 높은 저탄소기술의 개발이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열성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정된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린에너지의 비용을 낮추어 성장이 현저한 저탄소기술분에서 산업계가 최첨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취약점

1970년대, 198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을 향유할 수 있었는데, 에너지자원의 획득이 간단하였고, 단소에 관한 제약이나 시장의 긴급성이 없었다는 점은 화석연료의존을 방치하였고, 새로운 에너지기술에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대하여 시장주도에 의한 유인도 없었기에 단기간의 영업상의 이점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저탄소에너지 기술에 관해서 말하면, 가끔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개입은 필요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과정은 구상단계에서 시장으로의 침투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특유한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즉 필요로 하는 투자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량으로 나오기까지의 소요시간이 길며 또한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존재하는 기술상, 규제상의 경직성(타성)이 있다. 새로운 기술은 보다 좋은 에너지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기존기술에 비해 고가인 것이 일반적이다.

- 향후 몇 십년에 있어서의 주요한 기술과제

예컨대 2020까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 즉 ①연구를 강화하여 비용의 저하와 성능향상으로 연결시켜야만 한다. ②또한 장래를 예상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실시에 의해 비즈니스기회를 창출하고 시장개척을 활성화하며, 개혁이나 효율적인 저탄소기술의 시장침투를 저해하는 기술 이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가능한한 조기에 실용화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이나 인프라면에서도 커다란 변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 탄소배출량거래의 문제점과 과제

선진국에서 보다 적은 투자와 노력으로 가능한 탄소배출량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온실효과가스를 삭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은 희박해지고 만다. 거기에다 기술이나 시스템

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삭감이 어렵게 되며 결과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삭감이 정체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규모로 배출권거래를 운영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실시에 있어서 많은 곤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①기후변동의 영향이 국가마다 다르며, 온난화로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국가도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합의형성이 어렵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온의 상승폭이 작으면 악영향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비용의 경감 등 좋은 영향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악영향에 대해 대처하는 것만큼의 기술력도 자금력도 있으므로, 작은 기온의 향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의 합의가 어렵다. ② 각 참가국에 대한 초기분배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도 인구, 경제성장, 발전단계, 과거로부터의 배출량 등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배에 관한 국제 합의에 장기간에 걸친 교섭이 필요하다. ③각국의 배출량에 관한 모니터링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은 방대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에 한정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그 한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한 국가에 의한 모니터링의 제도가 틀릴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래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경제가 후퇴되어 있는 국가·기업의 잉여배출량(처치곤란한 배출량, 열)을 매입하여 현재 이상으로 배출함으로써 본래 감소해야 할 지구전체의 배출량이 거꾸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맞추기를 위한 배출량거래에 의존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되며 삭감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각의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배출량거래의 상한치를 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기술력 이전에 중점을

배출권거래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배출권거래에 의해 참가국간에 있어서의 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으며, 종래의 방법에 의해 낮은 비용으로 삭감을 실현할 수 있다. 그 한편으로 배출권구입은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관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지구온난화대책은 배출권거래만으로 충분한가, 자율적인 삭감에서 배출권거래로의 변화를 단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 단언할 수 없다. 환경대책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대기업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배양된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중소기업 그리고 국외에서도 전개하여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배출권거래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환경대책에 아주 유효한 구조이지만, 그것은 모든 주체가 최대한으로 자율개선을 전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대책에 관해서는 결코 금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하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정일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1. 「녹색성장기본법」과 동 시행령에 관한 의견

○ 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 상의 녹색성장위원회는 위 법령상 자문기관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동법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시에는 동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청(행정관청)으로 조직과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자문기관의 성격만 가지고 있어서 그 역할과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됨).

○ 동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괄기관으로서의 환경부와 각 분야별 담당기관으로서의 각 부처간의 역할조정사항은 동법의 추진체계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또한 동 규정에서는 환경부가 민간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등 공권력적 성격의 활동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한 침해적 작용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됨).

2. 법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각국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을 하는 데는 현지사정과 현지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전·현직 외교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됨.

최혁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녹색성장의 정책방향

○ '09. 7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신성장동력 창출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경제기반 조성
-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아울러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10대 정책방향 각각에 대해 다양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그 가운데 녹색국토 조성을 위해서는 5개년계획의 추진계획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과 함께 그에 수반되는 관련법제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법제의 과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공간 및 토지이용구조 전환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되도록 교통량이 감소되도록 도시공간 및 토지이용구조를 전환하고 토지이용을 복합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용도지역제의 탄력적 운용과 계획허가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계적 정비
 -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도시확산을 억제하고 토지이용을 고밀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기성시까지 정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하·공중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토지보상법 등 정비
 - 또 자원·에너지 순환을 위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정책방안임
 - 이를 위해 바람길 뚫기 및 하천 살리기를 추진하고, 빗물 재활용 및 중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 건축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등 정비
-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녹색공간 확충
-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원·녹지·수변공간 등의 확충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임
 - 이를 위해 도심내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수립지침 등 정비
 - 아울러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서는 유휴농지 및 한계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임
 - 이를 위해 유휴 우량농지에 대해 농업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생산성 없는 한계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정비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규제 합리화

○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저사용 산업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단지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관련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입지규제 및 폐수배출규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지지침 등 정비

회의록

박찬호 : 1부에서는 저희 센터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렸고, 2부는 법학의 전형적인 지정토론과 발표방식을 탈피해서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교류, G20을 먼저 진행하고 녹색관련해서는 토론을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 아젠다 발굴, 출구전략 및 법제선진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희문 : 브라질과 관련해서 출구전략을 이야기 하자면 출구전략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부러운 부분은 룰라 대통령의 임기 8년 동안 중앙은행장과 외교부장관이 룰라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마쳤기 때문에 정책이 안정적이고 신임이 두텁다는 것입니다. 현재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브라질의 금리, 기준금리를 언제 올리고 내릴 것인지 관심이 큼니다. 브라질의 경우 금융위기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와서 가장 빨리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조정에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위원회 예상으로는 2/4분기 7월초쯤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측한답니다. 좀 더 빠를 가능성 있습니다. G20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국가 그리고 파생되는 지역사안을 같은 아젠다로 보기보다는 정책의 신뢰도 및 정책지휘 인물로 예측가능합니다.

박찬호 : G20 아젠다부분, 경기, 금리, 미국 배출권거래법안이 경기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경희 국장님 아시아 쪽 G20 국가 중 중앙아시아는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법제교류 포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경희 :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법제교류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이 아시아쪽입니다. 아시아 각 국에서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우호적인 편입니다. 유럽은 문화·정서적 거리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경험을 아시아 각 국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큼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에 연수를 온 사례도 있습니다. 교류가 정부차원, 연구기관 및 종교관련 법조인단체 등 민간단체 교류가 매년 다양하고 산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중복가능성이 있고 효율성 떨어집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체계화이전 중요한 문제는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교류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에서 지원할 것이 요구됩니다. 법제교류체계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제연구원이 앞장서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지원예산 확보 및 민간단체 지원을 하고 국격을 높이는 부분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국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요조사 및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과 아시아 각국 및 인근 2-3개 국가에 법제관 등 주재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 및 본부에서 연구원이나 글로벌법제연구센터에서 법제지원전담 부서를 두고 관리하는 전담체제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다른 선진국 및 UNDP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야합니다. 네번째, 지원대상국 법률가 양성제도에 있어서 단기연수보다 장기연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법제를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제도를 두고 영문문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학제도도 확보해야 합니다.

박찬호 : 감사합니다. 효율화 및 체계화 등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ODA와 연계문제, 서구사회의 사례문제 등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유진식 : 박경희 국장님께서 법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나눴으면 합니다. 논의의 내용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법제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정부기관과 교류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요건이라고 박광동박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현지의 반발 및 유럽의 법과 개발이라는 목적의식에 의한 진행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을 지원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대법의 근저의 이념적 부분에 대하여 법학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수출을 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지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만큼 성과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 권리의식이 우리와 다릅니다. 분쟁과 갈등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유럽은 분쟁과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불순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합니다. 법제와 법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 양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판제도의 확립 등입니다. 이러한 법문화의 이식을 위한 논의는 대단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이는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제도 소개와 정착을 위해 현지의 권리의식 등 법제인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심층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려가 반영될 경우에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찬호 : G20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데 이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윤철 :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지금 유진식교수님 말씀과 사회자께서 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동박사께서 법제교류와 관련하여 지원 교류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주로 상하관계에서 이식하여서 지원을 받는 국가의 반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고, 유럽의 법률 특히 남아프리카 및 동유럽국가의 서구법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현지의 법제도 및 관습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법제 교류협력지원의 목적이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원보다 왜 지원하는지, 권리의식 및 연대의식 차원에서 지원하는지, 시장개발을 위하여 지원하는지, 해당국가의 경제시스템 속에 보다 쉽게 적용가능한지를 고려할 필요 있습니다. 교류협력 및 국가의 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한 기관 뿐 아니라 경제단체 등과의 교류도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달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등 있었고, 중국 출국전략과 유사한 정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내수전략 및 중국 위안화절상 문제 등 글로벌경제위기가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동해안 벨트와 서쪽 내륙간의 경제 불균형문제 등 경제영역에서 내륙 쪽으로 확대된다면 소수민족문제까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종합적 체계를 가지고 중국내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중국내에서 이루어진 최근 학계 논의는 반독점법 지적재산권 분야에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방향에 대한 시장 부분에서 우리는 관심이 부족하였고, 일본에서는 정부, 기업 및 일본 로펌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국법체계속에 이식하고자 하는 시도 등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아왔습니다. G20에 있어서 보다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국격과 국가의 이익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호 : 법제교류 및 G20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녹색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국가마다 중요한 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 법적과제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창수 : 2008년 12월 달초부터 녹색성장기본법 초안을 해서 12월29일 통과되었습니다. 지금은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배출권거래제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의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정하고, 경영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MBO식 목표관리, 성과관리, 타겟을 설정해서 측정, 확인하는 틀을 마련하고자합니다. 에너지법 및 지속가능성법을 고려하고 부처 간 역할을 고려하여 갈등을 피하며 협조적 관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행령을 작업하였고, 법제연구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를 듣다가 느낀 것인데,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냐는 것에 기후변화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석유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였고, 유가상승으로 서브프라임에서 손실을 본 것을 유가에서 만회하려다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리만브라더스가 이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물과 금융이 양면이어서 같이 봐야하고, 항상 유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에너지문제입니다. 법적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제안 법을 마련할 때 일본법을 많이 참고합니다. 우리법이 현재 영미 · 독일법제에 비해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법의 수출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관련해도 영미법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뿐 아니라, 학자 및 연구원,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서 유기적 상관관계를 맺어, 글로벌적 격을 높여야 합니다. 비교법연구도 필요합니다. 질 좋은 법을 잘 서비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언어적으로도 영문 법령의 서비스확대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아젠다의 법률의 국격을 높여야 합니다. 글로벌 아젠다관련해서 금융법제, IT법제 등 글로벌적으로 아이টে를 정해,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비교법제연구센터에서 글로벌법제연구센터로 전환, 이를 거점으로 산학협력 및 학제간 연구 또한 국제학술세미나 유치 등의 노력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필요합니다. G20에 있어서 개발과 협력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찬호 : 녹색관련 화두를 회피하시고자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판 및 보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낙훈 : 한국법제연구원이 정책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면 법제뿐 아니라 미국의 부록클린 및 후버 연구소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이 공포가 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마 오늘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정법 법보다 어려운 시행령은 처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완벽하지 않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규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목표관리의 역할과 원칙입니다. 부처 간의 업무분장이 치열하여 다른 시행령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부처 간의 권한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환경부에는 다른 부처가 하는 것에 스크린 하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총괄권한을 주었습니다. 환경부에 온실가스에 대해서만 권한을 주고 에너지에 대해서는 빼놓고 총괄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부문별 집행기관을 네 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해양부입니다. 환경부장과는 주무부서에 실태조사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관리업체 지정문제입니다. 관리업체는 업체로 보아서 12만5천 톤 사업장으로 가면 2만5천톤 사업장도 큰 사업장이 포함되면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전체를

총량개념으로 보고 관리업체로 봅니다. BAU 대비 30% 절감됩니다. BAU(배출전망치)는 현재대로 두면 2020년에 가서 나올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600개 업체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동차배출가스와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연비는 지식경제부, 온실가스는 환경부,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시행령에서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하고 연비는 지경부장관이 기준만 정하고 그 외 집행에 관한 것 제제 처분 및 관리는 환경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히 규정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시행령을 시행한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괄기관과 부분별 주무부처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부담이 시작되면 환경부 등으로 어느 한 부처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 질문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호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인데 동떨어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적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용 : 녹색성장기본법의 많은 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이 법의 내용과 다른 법의 규제와 충돌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각 부처와 협의하여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녹색으로 바뀌고 있는데 녹색성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좋다보니 기존의 모든 정책들이 각종 계획을 짜는데 녹색으로 옷을 갈아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이 기본법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총리실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관리업체 지정, 실적조사, 개선명령, 명세서 등 각종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으로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각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줄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업체의 경우 지정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관리업체에 대해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어떻게 할당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정자체가 공무원 권한이 되어 버리고 관리업체가 휘둘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관리업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줄 것이 필요합니다. 명세서의 영업 비밀성에 대하여 외부유출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과 인도가 태양광에 선두주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녹색 성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의한 개별법제에 대한 지원은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산업이 클 수 있는 여건조성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박찬호 :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윤덕기 :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공무원 집행입장에서 이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의 지적에 대하여 의견 첨언하겠습니다. 시행령이 완벽하지 않지만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첫째,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추상적 규범들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한 것, 두 번째 BAU대비 30%목표 감축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실천의지를 보여준 것, 세 번째 독자적인 모델인데 총괄기관과 부문별 관장기관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국적 특수성하에서 부처 간 전문성 및 책임성 살릴 수 있는 안이라 생각하고 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처 간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있지만 과거 산업화시대를 지나 현재 선도하는 입장에서 겪어야 하는 숙명이라고 봅니다. 법 자체나 시행령의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공백을 매우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기준일 수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업체 지정에 관하여 이 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침 등을 통해서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박찬호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보고절차 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식 : 일본의 기후변화대책을 관련해서는 업체의 자율규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법이 행정지도를 전제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 특히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산업계의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찬호 :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법이 통과가 되면 배출권거래제 등 더 강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우리보다 더 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 공개, 영업비밀, 환경정보에 대한 문제가 키 테마로 보여집니다.

이창수 : 정태용 교수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우리과제가 타법에 의하여 고쳐야 할 것이 많고, 법과 법의 충돌, 기본법과 법과의 충돌합니다. 녹색관련법률 7-80개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돌을 피하고 조화롭게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린와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 역량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고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로 만들었고 총리실, 청와대, 녹색성장위원회 삼자가 기획재정부까지 합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이 중요한지 성장이 중요한지 등 문제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주로 시행령과정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작업하다보니 대부분 온실가스 관련된 규제내용을 법에 위임하다보니 시행령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파트는 별도로 강구예정입니다. 4월14일 선포 때도 그런 파트는 따로 대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배출권거래제, 세법 등 법에 담을 예정입니다. 관리업체지정, 목표설정 등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있습니다. 목표설정의 경우 목표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고 계획 설정에 있어서는 교섭과정을 둘 것이고, 이것이 할당이기 때문에 할당위원회를 둘 것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외국에는 없고 개념만 있을 뿐, 중국적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얼리 액션을 인정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배정하고 측정하고 인정할 것인지는 내부통합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MRR과 같은 지침을 환경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상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관계부처협의 및 녹색위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명세서의 영업비밀 유출문제는 MRR을 보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이지만,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명하고 심사를 거쳐 인정받는 형태로 예외를 인정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막고자하는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자율규제형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하또야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계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박사님 말씀대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는 우리가 작업할 때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본도 우리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경우 자율규제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율규제를 시행해보았지만 현재 실적이 없어 곤란하다고 봅니다.

박찬호 : 관리업체 지정문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기업단위 12만5천톤 사업장단위 25000톤, 환경부예상 600개 기업,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이 기준자체가 배출권거래제에 범위와 연결됩니다. 관리업체 지정기준이 현재로서는 국제표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의무보고제로 21인 이상 사업장 3000발열량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수 : 법제지정기준은 연차별로 높여 관리업체를 증가시켜갈 것입니다. 목표설정과 관련 입법예고 초안은 이행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는 법률하고 맞지 않아서 체계별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행 모범체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박찬호 : 명세서를 보면 기본법 제42조 실절보고 제44조 명세서 관련 규정입니다. 이것을 시행령 상에서 2중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에 제출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공정이 들어가고 원료가 들어가고 매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MRR에서도 공개가 원칙,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 침해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총량보고만 하면 되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명세서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입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덕기 : 관리업체지정에 대해 해외동향을 보았을 때 적절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단, 어떠한 데이터로 할 것인가,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의 경우에는 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공개되었을 때, 생산량과 원가 등이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기업영업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고, 기업의 의견이 적절하다면 받아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세서의 공개범위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산업계, 전문가,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위원회 등을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낙현 : 명세서공개문제는 모법 상보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위원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기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런 입법례가 드뭅니다. 명세서 공개문제는 모법 상에서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구성이나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상당히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시행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행하면서 쌓이면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찬호 : 실질적으로 에너지만 줄인다고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부문별로 다릅니다. 전반적 포괄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요구됩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가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시행령 상에서 목표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로만 충분한지 600대상만을 갖고 향후 증가되겠지만, 배출권거래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대응 관련법이 온실가스 감축이 목적인데 목표관리로 줄이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원 부분 탄소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 : 이창수 국장님 말씀 중에 배출권거래제를 준비 중에 있고, 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어떻게 보시고 계신

지 배출권이 민법상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 할당위원회가 관리업체지정도 관련이 있겠지만, 관리업체지정된 업체가 목표치 또는 배출량 한도에서 줄인다면 배출권까지 주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할당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거래량을 지정해주고 시장에서 과생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할당위원회가 관리지정업체가 법률 또는 법령이 지정한 범위를 위반하였다고 할 때, 거래허가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시장에서 재산권화 되버린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제가 배출권의 법적성질이 뭐냐 정해지지 않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권거래 CDM 등의 영역에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는 이미 뒤로 물러나게 되고 시장에서만 리먼브라더스 등에서 보았지만 성악설적 입장에서 그렇게 가면, 애당초 시작했던 기본법의 목적과 맞물리면서 한 쪽은 여전히 보전이나 개발이냐의 패러다임에서 굴러갈 것 같은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창수 :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성격은 무체재산권, 유체재산권, 금융자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할당위원회와 목표관리제는 더 깊이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가지 원칙은 무엇을 할 때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를 왜 공개하느냐. 그 이유는 온실가스가 준오염물질이기 때문에 환경에 위해하니깐 공개한다는 것을 넘어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투명성 촉진, 기술개발촉진, 규제가 시장을 창출하고, 또 하나는 기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키고 기업에 이익이 되고 나라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출권거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저렴한 비용에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접 줄일 수 있고 크레딧 구입을 통해 줄일 수 있고, 그에 의해 파생상품, 현물거래를 통해 시장창출 및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EU ETS와 같이 국제적인 시스템에 참여해야 합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에 있어서 하이브리드로 가는데, 혼합된 정책으로 고민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법적성격과 연결되는데, 단순히 실물중심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거래소까지 관련해서 금융자사관 관련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 이데올로기, 국제정치, 법적, 국제법적 아젠다입니다. 코펜하겐 어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발전하면 조약이 되니깐, 이 분야에 관심을 갖아주시고 한번 해 볼 분야입니다.

박찬호 : 인벤토리 총괄기관이 환경부이고, 대부분 외국사례는 인벤토리 총괄기관이 배출권거래 관리기관입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올해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덕기 : 궁극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은 저탄소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탄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배출권거래제에 있다고 봅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하지 않고, 목표관리제만 유지한다면 MRV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고려한 것은 체제는 선진적으로 운영은 유연하게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목표관리자체가 정책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탄소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탄소시장에 진입하여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및 그 혼합, CDM 탄소오프셋까지 거래될 수 있는 선진적인 MRV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 배출권관련 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 플로어에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법제연구센터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 통과하고 14일 시행을 앞

두고 시행령관련 설명회는 국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승우 : 기후변화와 지적재산권의 관련. 기술이전의 촉진, 기술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약품과 같은 강제 실시권 요구도 있습니다. CDM 과 같이 개도국에게 기술이전 해주고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인정해서 후에 배출권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지원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촉진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개도국과 선진국의 문제는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와도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개도국에 기술이전 후 감축부분에 대한 인정은 교토프로토콜의 CDM방식입니다. CDM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매우 엄격합니다. 개도국 자체의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고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와 같은 곳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정책적으로 모델링을 제시하고 감축시켰을 때, CDM에 유사한 크레딧으로 인정받게 하는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CDM체제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권 형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도국에서는 무료로 해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꺼리는 입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수현 : 금융법전공입니다. 저탄소와 금융의 관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반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분야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녹색투자를 통해서 녹색기술을 갖고 있는 녹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색투자회사는 공공기업들이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있는데, 영국 제안은 저탄소도 지원하지만 녹색버블, 녹색위싱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적의 모니터링 등 자금이용에 관한보고 및 팔로잉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탄소와 같은 부분은 투기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버블 발생합니다.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ETS와 관련할 때, 성장을 하고자하는 기업은 외부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를 구입하고자 하고 시장이 없으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해서 추가로 탄소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기구에서 관련파생상품 등 배출권을 시세 조정 등 금융규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금융 스캔달이 일어날 것으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창수 : 녹색투자회사가 녹색펀드 같은 것입니다.. 펀드의 60%이상을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녹색인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증자체가 하나의 시장진입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겠다고 판단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보고와 공시제도, 거래소 및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고된 자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 및 팔로잉하기위한 제도로서, 주무기관에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감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감독적인 시세조정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탄소거래소와 관련, 거래주체를 전력거래소가 할 것인가 등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낙훈 :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펀드에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8조에 보면, 금융상품의 예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작업할 때 금

용위에서는 배출권거래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 위원회에 당연직 멤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일 : 시행령 내용을 보니 법률의 위임 및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한다면 법령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주체가 녹색성장위원회가 나오고 환경부가 나오고 지식경제부, 농림부 등 부문별 기관이 나오고 청와대, 총리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총리실이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정책적 차원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권한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 녹색성장위원회의 조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총리실에서 사실상 관장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좀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행정청으로서 실질적인 행정청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과 성장, 환경부와 다른 부서의 관계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위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6조에서 부문별 주무부처에서 전문지식이 있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니깐 지정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대립하면 지경부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자신이 옹호해야 할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환경부의 가능한 조치가 있지만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 :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녹색위가 자문위원회인데 앞으로는 법제도를 만드는 정책자문, 온실가스목표연구 및 조정 등을 하고, 앞으로는 집행관리로 접어들 텐데 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입법선진화」

한지 문제됩니다. 그 단계에서도 자문위원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기후변화부, 프랑스는 국토부와 환경부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합쳐 부총리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도 에너지기후변화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시행령 개선명령 시행조사 등에 대한 공권력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매우 적절한 부분입니다. 선수심판분리론에 있어 옹호부처가 규제할 수 있느냐, 제도를 시행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단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될 것입니다.

박찬호 : 오늘 전체 회의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측면에서 시행령작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부처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조정의 과정이 좀 심했다고 보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녹색성장, 온실가스, 성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시작 단계이니깐 여러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법제연구센터의 사업의 설명회자리이지만, 오늘 다양하게 논의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